



제42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44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03. 14.
3. 회부연월일 : 2025. 0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의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업무 역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에는 대안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되며, 학교밖청소년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에도 학교밖청소년 및 학교교육을 각각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소관함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소관 사무 중 “학교밖청소년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u>학교교육·평생교육</u> ,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교육부) ① ----- ----- ----- <u>학교교육(학교밖청소년업무를 포함한다)</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여성가족부) ----- ----- ----- ----- <u>(학교밖청소년업무는 제외한다)</u> 및----- -----.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2001년 신설된 이후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업무를 이관받아 2005년부터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었으며, 2008년 다시 보육·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여성부로 개편되었고, 2010년 ‘청소년·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다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었음¹⁾.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기본법」²⁾에 따라 국내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은 주로 가족 부문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학업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학교 밖 청소년³⁾에 관한 정책은 지원 및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⁴⁾

이와 관련하여 2025년 기준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 규모는 여성가족부 총예산의 약 13.8%(2,449억 4,200만원)로, 가족정책 예산(1조 2,319억 5,300만원)이 여성가족부 총예산의 69.3%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상당히 적은 것임.

1) 주요연혁(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 ▶'88.02 정무장관(제2실)
- ▶'98.02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 ▶'01.01 여성부 신설
- ▶'04.06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업무 이관
- ▶'05.06 여성가족부로 개편
- ▶'08.02 여성부로 개편(보육·가족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 ▶'10.03 여성가족부로 개편(청소년·가족업무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2) 「청소년 기본법」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개정 2015.2.3.>)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4) "학교밖 청소년 있는데 실제 지원은 2년간 5000명 감소", 동아일보, 2024.7.22., "여가부 폐지 논란에 청소년정책은 뒷전...폐지시 위축 우려", 연합뉴스, 2022.4.17.,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여성가족부 기능별 정원·예산 현황(2025년도)】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정책	권익증진	행정지원	계
정원	36	59	52	56	49	291
비율	12.4	20.3	17.9	19.2	16.8	100
예산	120,336	244,942	1,231,953	140,478	41,123	1,778,832
비율	6.8	13.8	69.3	7.9	2.3	100

자료 : 여성가족부

반면, 2023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16만 7천명으로 2년 전(14만 6천명)보다 54.1%(2만 1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학교 밖 청소년 수 ① = ② - (③ + ④)			
	(6~17세 기준)	학령인구② (주민등록)	학생③ (교육통계)	해외 순출국④ (국제인구이동통계)
'23년	167	5,480	5,240	73
'22년	168	5,540	5,298	74
'21년	146	5,589	5,344	99

주) ② (학령인구) 전년 12월 31일 기준 6~17세 주민등록 인구 수

③ (학생) 각년 4월 1일 기준 6~17세 학생 수(연령은 전년 12월31일 기준)

④ (해외순출국) 전년 12월 기준 6~17세 순출국 수(출국자 - 입국자) '18년 누적

자료 : 행정안전부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교육부에서 학령기 청소년 관련 정책을 체계적·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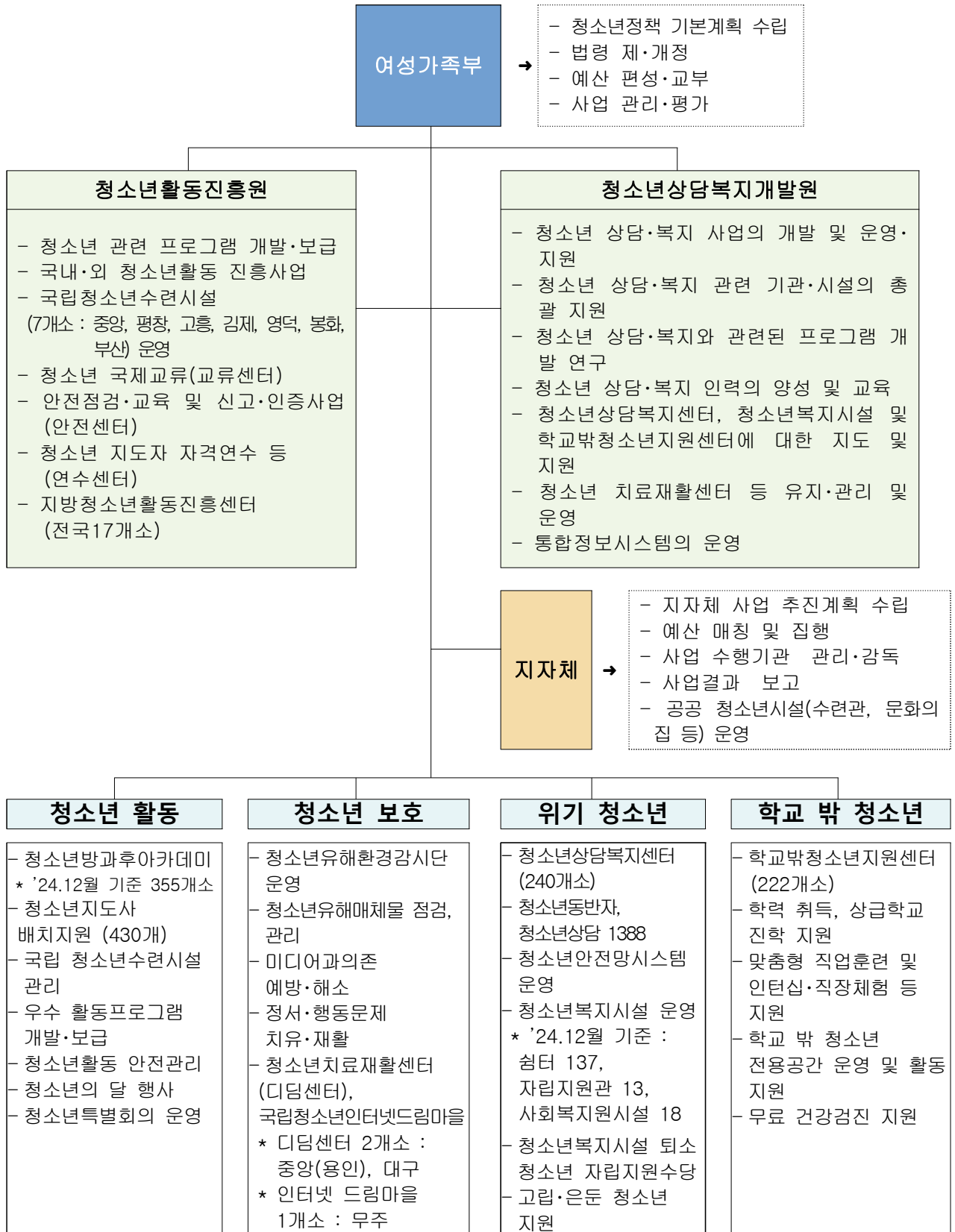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권 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총괄·조정하는 청소년에 관한 사무 중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무”만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있는바, 이 경우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을 위한 보호·복지 정책의 대상 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임.

현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거나 미인가 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분야는 교육부에서, 그 외 청소년 지원 정책 분야는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관장하게 되어 부처 간 칸막이식 정책 추진으로 긴밀한 연계·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호의 강도가 달라지는 등 청소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둘째, 법률적으로 교육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개별 행정부처에서 소관 분야별로 전문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해 보임.

현재의 청소년 관련 정책은 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각을 전담하고 있는 개별 행정부처와 정책 연계를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문제해결·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⁵⁾

예를 들면, 교육부는 2017년부터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꿈이음)을 통해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업중단학생들이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바,⁶⁾ 학교장⁷⁾ 및 단체장⁸⁾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⁹⁾

5) “학업중단 예방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까지 범정부 지원 강화한다”, 교육정책뉴스, 2023.11.28.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6.

7)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함.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함.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관련 지원센터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유관 부처의 의견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4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는 여성가족부의 他 업무와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¹⁰⁾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보호·복지·활동 등 통합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청소년 대상 학업 위주의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부와는 그 역할 및 기능에 차이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상 교육체계 개편 없이 교육부로 이관 시 학교 부적응 등으로 재이탈 및 맞춤형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커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함.

반면, 교육부는 교육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연계·통합하면 정책효과성이 제고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 경우 조직·예산 등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10) 행정안전부는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밖청소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위기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 부모 등으로 구분·연결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대상만 분리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함.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청소년정책 유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39